

'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발표

- 채무보증금액 및 자기자본대비비율 모두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4일(수)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금액 및 자기자본대비 비율이 모두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다는 내용의 '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4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제한대상)은 지난해 26.8조원에 비해 17.1조원이 감소된 9.8조원(해소율 : 63.6%)으로 나타났고, '99년 4월 1일 이후에도 지난 6월말까지 2.1조원이 추가로 해소되어 '99년 6월말 현재는 약 7.7조원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년 4월 1일 현재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작년 39.5%에서 9.7%로 29.8%p 감소해 채무보증의 해소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합리화, 해외건설관련 보증, 기술개발 자금관련 보증 등 공정거래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각종 제한제외대상 기존채무보증도 이업종간 채무보증해소의 추진 등으로 '99년 4월 1일 현재 지난해 36.6조원보다 2.4조원이 감소한 12.6조원 수준이며, '99년 6월말 기준으로는 1.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도 30대 기업집단의 규모별 채무보증을 살펴보면, 5대 기업집단의 경우 '98년 4월 1일 현재 11.1조원에서 '99년 4월 1일 현재 2.3조원으로 8.8조원을 해소하여 해소율이 79.5%에 달하며,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은 전년도 15.8%에서 '99년 4월 1일 현재 7.5조원으로 8.3조원을 해소하여 52.5%의 해소율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을 보면 5대 기업집단의 경우 3%에 불과한 데 비해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의 규모별로 채무보증의 해소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대 기업집단은 양호한 신용상태 등으로 여신상환(28.6%)과 함께 신용대출로의 전환(28.1%), 금리조정(28.0%) 등의 방법으로 채무보증을 해소한 반면,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신용전환 등을 통한 채무보증의 해소보다는 보증·피보험회사의 합병이나 계열사 매각(24.0%)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도래 여신을 상환(45.5%)하는 방법으로 채무보증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과정에서 9.8조원의 전체 채무보증금액 중에서 주기업체인 채무보증 상위 3개사의 비중이 93.2%로 전년도에 비해 7.7%p 증가하여 주기업체의 채무보증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5대 기업집단보다는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이 주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업체의 채무보증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채무보증의 해소 과정에서 비주력계열사들의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해소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채무보증의 해소 추이를 감안할 때 5대 기업집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기한 내인 2000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5대 기업집단의 경우 '99년 4월 이후부터 '99년 6월말까지 0.8조원을 채무보증을 추가로 해소하여 채무보증 잔액이 1.5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강도 높

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주요계열사가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집단의 경우 기한내 해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무보증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매 분기별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점검하고 해소실적이 저조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소를 독려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 후 신규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99년 6월말 현재 약 8,400억원 규모의 중복·과다보증과 1조4,400억원 수준의 포괄근보증 및 2000년 3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4,000억원 수준의 회사채 관련보증의 조기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관련보증이 많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

◆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조원, %)

구 분	자기자본 (A)	채무보증 금액			자기자본 대비비율(%)	
		계(B)	제한(C)	제한제외(D)	B/A	C/A
'93. 4. 1	35.2	165.5	120.6	44.9	469.8	342.4
'94. 4. 1	42.8	110.7	72.5	38.2	258.1	169.3
'95. 4. 1	50.7	82.1	48.3	33.8	161.9	95.2
'96. 4. 1	62.9	67.5	35.2	32.3	107.3	55.9
'97. 4. 1	70.4	64.9	33.6	31.3	92.2	47.7
'98. 4. 1	68.1	63.5	26.9	36.6	93.1	39.5
'99. 4. 1	100.4	22.4	9.8	12.6	22.3	9.7

◆ '98.4.1. 이후 채무보증 해소 사유별 현황 ◆

(조원, %)

구 분	계	여신상환	신용전환	금리조정	담보 개인입보	합병, 매각 등	기 타
1~5대	8.84	2.53	2.49	2.48	0.76	0.35	0.23
	(100)	(28.6)	(28.1)	(28.0)	(8.6)	(4.0)	(2.7)
6~30대	7.38	3.36	1.02	0.09	0.75	1.77	0.39
	(100)	(45.5)	(13.9)	(1.2)	(10.2)	(24.0)	(5.2)
30대 전체	16.22	5.89	3.51	2.57	1.51	2.12	0.62
	(100)*	(36.3)	(21.6)	(15.8)	(9.3)	(13.1)	(3.9)

* '99년도에 신규지정된 2개 기업집단(제일제당, 삼양)과 지정제외된 2개 기업집단(뉴코아, 거평)을 제외한 28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 기업집단별 채무보증(제한대상) 변동현황 ◆

(1999. 4. 1. 기준, 단위 : 백만원, %)

기업집단	'98. 4. 1. 현재			'99.4.1. 현재			'98년 대비 현황	
	자기자본 (a)	제한대상 (b)	c = b/a	자기자본 (d)	제한대상 (e)	f = e/d	해소금액 (g = b - e)	해소율 (h = g/b)
현 대	10,668,970	3,173,680	29.7	19,285,882	871,249	4.5	2,302,431	72.5
대 우	9,035,150	3,747,159	41.5	16,870,656	819,982	4.9	2,927,177	78.1
삼 성	13,492,079	2,277,506	16.9	18,151,341	377,060	2.1	1,900,446	83.4
엘 지	8,491,102	1,558,015	18.3	11,552,950	133,329	1.2	1,424,686	91.4
에스케이	5,121,652	375,648	7.3	3,563,235	85,838	0.9	289,810	77.1
1~5대 소계	46,808,953	11,132,008	23.8	75,424,064	2,287,458	3.0	8,844,550	79.5
한 진	1,873,856	674,476	36.0	2,062,793	432,959	21.0	241,517	35.8
쌍 용	2,984,197	1,133,757	38.0	935,668	749,649	80.1	384,108	33.9
한 화	917,478	1,339,535	146.0	2,989,378	678,772	22.7	660,763	49.3
금 호	978,492	856,427	87.5	1,607,879	349,015	21.7	507,412	59.2
롯데	2,732,906	543,345	19.9	4,776,946	236,254	4.9	307,091	56.5
동 아	1,908,502	973,083	51.0	934,611	782,018	83.7	191,065	19.6
한 솔	1,221,700	451,919	37.0	1,578,307	356,328	16.8	186,591	41.3
두 산	954,044	394,332	41.3	1,552,485	160,719	10.4	233,613	59.2
대 립	1,090,254	812,113	74.5	1,258,760	337,448	26.8	474,665	58.4
동국제강	691,803	346,392	50.1	1,358,976	170,079	12.5	176,313	50.9
동 부	996,599	457,569	45.9	1,440,674	255,093	17.7	202,476	44.3
한 라	- 633,587	628,945		- 407,394	459,001		169,071	26.9
고 합	901,095	414,178	41.3	- 798,527	34,317		337,620	90.8
효 성	1,007,526	384,936	17.8	1,351,760	66,390	4.9	112,483	62.9
코오롱	901,609	638,945	70.9	1,127,630	350,858	31.3	288,087	45.1
동 양	625,151	414,178	66.3	876,254	172,849	19.7	241,329	58.3
진 로	- 804,111	384,936		- 854,853	238,517		146,419	38.0
아 남	269,046	422,189	156.9	47,867	385,604	805.6	36,585	8.7
해 태	234,105	296,045	126.5	- 629,124	273,329		22,716	7.7
새 한	512,010	551,562	107.7	932,153	256,276	27.5	295,286	53.5
강원산업	560,770	1,041,591	185.7	545,733	314,174	57.6	727,417	69.8
대 상	380,247	453,030	119.1	757,653	45,107	6.0	407,923	90.0
제일제당	-	-		1,127,105	110,786	9.8		
신 호	387,058	1,236,238	319.4	- 403,695	210,272		1,025,966	83.0
삼 양	-	-		788,091	160,110	20.3		
6~30대 소계				24,957,130	7,494,924	30.0	8,266,558	52.4
'99 합계				100,381,194	9,782,382	9.7	17,111,108	63.6
뉴 코 아	150,910	618,262	409.7					
거 평	489,130	542,676	110.9					
6~30대 소계	21,330,790	15,761,482	73.9					
'98 합계	68,139,743	26,893,490	39.5					

◆ 기업집단별 채무보증(제한대상) 해소방법 ◆

기업집단	해소액	해 소 방 법('98.4.1 ~ '99.4.1)						
		여신상환	신용전환	금리조정	담보·개인	합병(청산)	환 율	기 타
현 대	23,024	5,884	4,686	8,239	4,269	25	269	-348
대 우	29,272	7,504	6,691	12,929	925	350	52	821
삼 성	19,004	6,594	7,507		302	3,080	30	1,491
엘 지	14,247	3,615	5,269	3,625	1,693	45		
에스케이	2,898	1,708	733		451		4	2
1~5대 소계	88,445	25,305	24,886	24,793	7,640	3,500	355	1,966
한 진	2,415	1,738	317		174	555		-369
쌍 용	3,841	2,051	1,197		867	242	238	-754
한 화	6,608	3,344	25		82	3,077	11	69
금 호	5,074	1,318		834	585	2,244	88	5
롯데	3,071	1,506	1,060		157		76	272
동 아	1,890	400				5	0	1,485
한 솔	1,866	1,620	138				108	
두 산	2,336	821			126	1,363		26
대 립	4,747	2,580	1,283		265			619
동국제강	1,763	1,317	228		63		77	78
동 부	2,025	835	346		773		22	49
한 라	1,724	1,691					33	
고 합	3,376	1,310	2,066					
효 성	1,125	53				1,530		-458
코오롱	2,881	2,046	29		189		21	596
동 양	2,413	1,406	253		353		3	398
진 로	1,464							1,464
아 남	366	1,452	64	28	9		61	-1,248
해 태	227	152	597				15	-537
새 한	2,953	2,881				53	19	
강원산업	7,274	2,529	465		3,150		86	1,044
대 상	4,079	1,076	735		697	1,571		
제일제당	0							
신 호	10,260	1,443	1,426		10	7,047		334
삼 양	0							
6~30대 소계	73,778	33,569	10,229	862	7,500	17,687	858	3,073
합 계	162,223	58,874	35,115	25,655	15,140	21,187	1,213	5,039

주1) '99년 신규지정된 제일제당, 삼양과 지정제외된 뉴코아, 거평을 제외한 28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

2) 기타 감소사유는 계열제외, 부실채권매각 등이며, (-)항목은 신규계열편입, 비계열사 합병 등에 따른 보증증가액임

◆ 기업집단별 채무보증(제한제외) 변동현황 ◆

(1999. 4. 1. 기준, 단위 : 백만원, %)

기업집단	'98. 4. 1. 현재			'99. 4. 1. 현재			'98 대비 현황	
	자기자본 (a)	제한제외 (b)	c=b/a	자기자본 (d)	제한제외 (e)	f=e/d	해소금액 (g=b-e)	해소율 (h=g/b)
현 대	10,668,970	8,046,606	75.4	19,285,882	451,722	2.3	7,594,884	94.4
대 우	9,035,150	7,498,071	83.0	16,870,656	1,504,343	8.9	5,993,728	79.9
삼 성	13,492,079	1,458,338	10.8	18,151,341	205,362	1.1	1,253,276	85.9
엘 지	8,491,102	928,351	10.9	11,552,950	322,904	2.8	605,447	65.2
에스케이	5,121,652	440,329	8.6	3,563,235	172,128	1.8	268,201	60.9
1~5대 소계	46,808,953	18,371,695	39.2	75,424,064	2,656,159	3.5	15,715,536	85.5
한 진	1,873,856	7,190,318	383.7	2,062,793	4,855,384	235.4	2,334,934	32.5
쌍 용	2,984,197	1,032,952	34.6	935,668	674,937	72.1	358,015	34.7
한 화	917,478	65,760	7.2	2,989,378	46,538	1.6	19,222	29.2
금 호	978,492	1,025,432	104.8	1,607,879	693,887	43.2	331,545	32.3
롯데	2,732,906	0	0.0	4,776,946	0	0.0		
동 아	1,908,502	2,060,275	108.0	934,611	1,081,889	115.8	978,386	47.5
한 솔	1,221,700	11,474	0.9	1,578,307	6,151	0.4	5,323	46.4
두 산	954,044	143,397	15.0	1,552,485	20,510	1.3	122,887	85.7
대 립	1,090,254	2,597,649	238.3	1,258,760	953,778	75.8	1,643,871	63.3
동국제강	691,803	146,577	21.2	1,358,976	122,344	9.0	24,233	16.5
동 부	996,599	60,545	6.1	1,440,674	26,495	1.8	34,050	56.2
한 라	- 633,587	2,615,070		- 407,394	1,030,625		1,584,445	60.6
고 합	901,095	0	0.0	- 798,527	0			
효 성	1,007,526	266,990	26.5	1,351,760	2,238	0.2	264,752	99.2
코 오 룡	901,609	332,527	36.9	1,127,630	29,090	2.6	303,437	91.3
동 양	625,151	11,102	1.8	876,254	2,817	0.3	8,285	74.6
진 로	- 804,111	36,503		- 854,853	32,973		3,530	9.7
아 남	269,046	52,644	19.6	47,867	23,860	49.8	28,784	54.7
해 태	234,105	66,195	28.3	- 629,124	25,428		40,767	61.6
새 한	512,010	7,684	1.5	932,153	10,836	1.2	- 3,152	- 41.0
강원산업	560,770	6,007	1.1	545,733	0	0.0	6,007	100.0
대 상	380,247	111,164	29.2	757,653	7,527	1.0	103,637	93.2
제일제당	-	-	-	1,127,105	0	0.0		
신 호	387,058	353,435	91.3	- 403,695	314,921		38,514	10.9
삼 양	-	-	-	788,091	397	0.1		
6~30대 소계				24,957,130	9,962,625	39.9	8,231,578	45.2
99 합계				100,381,194	12,618,784	12.6	23,947,114	65.5
뉴 코 아	150,910	0	0.0					
거 평	489,130	503	0.1					
6~30대 소계	21,330,790	18,194,203	85.3					
98 합계	68,139,743	36,565,898	53.7					

하도급거래 전면 직권실태조사 추진현황 발표

- 원사업자 서면조사 결과 하도급대금관련 위반행위 비율이 가장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목)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6월 8일(화)부터 실시한 '99년도 하도급거래 전면 직권실태조사 추진현황과 원사업자 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¹⁾

공정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기존의 한정된 현장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시간과 인력 등의 제약으로 조사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조사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에는 효과가 미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직권 실태조사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건설관련 400개 업체와 제조관련 600개 업체 등 원사업자

1,000개 업체를 선정하여 '98년 하반기('98.7.1~12.31)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전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하였으며, 동 조사기간 중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자진 지급사례 등이 상당수 나타남으로써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사업자들로부터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을 지급이라도 지급하면 추후 시정조치시 감안될 수 있는지, 혹은 원사업자들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어음할인율 등 하도급법 관련규정에 대해 공정위에 문의하는 등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1개 항목이라도 위반행위가 있는 업체수는 전체의 89.3%로 제조업체는 87.9%, 건설업체는 91.6%에 달하였으며, 5개 이상 위반행위 업체수의 비율은 전체의 20.2%로 제조업체는 15.2%, 건설업체는 28.3%에

◆ 하도급법 위반업체 현황 ◆

구분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원사업자 수 (A)	위반 업체수(B)	비율 (B/A)	위반항목별 업체수										
				1	2	3	4	5	6	7	8	9	10	계
제조	513	451	87.9%	94	109	100	70	51	15	10	1		1	451
건설	322	295	91.6%	60	45	49	50	45	27	12	5	2		295
계	835	746	89.3%	154	154	149	120	96	42	22	6	2	1	746

* 범위반 총항목 : 제조 18개 항목, 건설 19개 항목

1) '99년도 하도급거래 전면 실태조사의 개요는 공정경쟁 제46호('99년 6월) pp.25~26 참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음할인료·지연이자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비율이 전체의 35.3%(제조 34.7%, 건설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도급계약서 등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위반이 전체의 32.8%(제조 42.0%, 건설 2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면조사 결과 나타난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 중 83%(제조 53.3%, 건설 93.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34.8%만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을 살펴보면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수는 제조업체의 경우 56.1%, 건설업체의 경우 72.5%로서 전체의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업체수도 전체의 26.5%에 달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1차 서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8월 3일(화)부터 8월 24일(화)까지의 기간 중 원사업자의 서면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 800개 업체, 제조 1,200개 업체 등 2,000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대질조사를 실시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대질조사에서는 원사업자 조사항목에 대한 확인과 함께 어음할인료 등을 일단 지급하였다가 다시 회수하거나 단가를 인하는 행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입금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탈법행위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게 되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대질조사가 끝나면 '99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결과를 토대로 허위응답업체나 범위반정도가 큰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

구 분	제 조		건 설	
	건	비율(%)	건	비율(%)
서면미교부 및 미보조, 검사결과 미통지	557	42.0	213	20.8
부당한 대금결정	48	3.6	45	4.4
대금지급관련 (선급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관세미환급, 부당감액 등)	460	34.7	370	36.1
신용장 미개설	14	1.1	-	-
수령거부 및 발주취소	228	17.2	233	22.7
물품구입 강제	12	0.9	1	0.1
부당한 결제청구	6	0.5	-	-
대금지급 미보증	-	-	144	14.0
부당한 대물변제	-	-	20	1.9
위반행위 계	1,325	100.0	1,026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방식을 통한 하도급 직권 실태조사는 처음 시도된 것이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가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서면조사방식을 확대하여 실시해 나갈 경우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73년부터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서면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급사업자 회수율은 약 40%에 불과한 점을 살펴볼 때 서면직권실태조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들의 성실한 조사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원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물가변동 미조정, 대금금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비율이 가장 높으며, 어음결제비중이 높고 어음만기일도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이와 함께 현금결제비율 유지, 어음만기일 제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의무화 등 지난 '99년 4월 1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시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등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위반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 동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는 한편 신고사건인 경우 신고내용에 없더라도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약단계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하도급거래시 공정위가 권장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시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IMF체제 이후 다양한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저가하도급결정, 대물변제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원사업자의 서면조사결과에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대조 조사결과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허위보고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1999년 8월 현재

☞ 부이사관 승진

주 순 식(朱舜植, 독점국 독점관리과장)

☞ 서기관 전보

총괄정책과 지 철 호(池澈湖, 前 정책국 제도개선과)

주미대사관 파견 김 성 하(金聖夏, 前 정책국 총괄정책과)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목) 행정지도¹⁾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과거 개발년대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지도·규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 생산설비 등을 규제·조정하는 등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사례가 많았으며, 그 결과 가격이 왜곡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도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이 감소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규제적 기능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담합의 관행을 단절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훈령 등 하위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정지도가 잔존하고 있으며, 최근 맥주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9년 5월)²⁾ 및 12개 농약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99년 7월)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이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하는 각종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자제토록 하고, 행정지도를

빙자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정지도가 사업자의 담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원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고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빌미로 담합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각급 행정기관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주체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즉, 각 행정기관은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하며,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에 관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³⁾에 합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 수단도 사회통

- 1)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 성질상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
- 2) 맥주제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제47호('99년 7월)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pp. 46~52, 정호열) 참조
- 3)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공정거래법 제1조)

념상의 한도를 일탈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지도를 사업자단체 또는 지배적 기업(Leading Company)을 통해서 실시할 경우 공동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자들에게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행정지도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쟁관

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협의하거나 연락을 행하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게 되므로 행정지도의 실행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행해야 하며,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의 구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 ◆

구 분	법 위반을 초래하는 행정지도	법 위반이 되는 사업자 또는 단체의 행위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 그 금액, 변동율, 변동폭 등을 정해서 행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제시된 기준까지 또는 특정한 수준으로 인상·인하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당경쟁 방지 등 가격인하를 지속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의 유지를 결정하는 행위
	원가,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격을 결정·유도하는 행위
영업방법, 광고, 표시 등에 관한 행정지도	영업방법, 품질, 광고, 표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화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업방법 등을 결정하는 행위
수량·설비에 관한 행정지도	생산·판매수량, 원재료의 구입수량 등에 대해 숫자를 제시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판매수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
	단기 수급전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생산·판매수량 또는 설비의 신·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행위
	설비투자 또는 설비의 폐기시기·규모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비투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
진입·퇴출에 관한 행정지도	신규진입시 해당분야의 기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동의를 얻거나 가입하게 하는 행정지도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규진입 저지를 위해 사업수행상 필요한 단체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중요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수)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서 『중요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중요정보 공개의 대상업종과 중요정보내용 고시(안)에 대한 학계와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이번에 개최된 공청회는 조병량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장의 사회로 건국대 이승신 교수, 성균관대 임흥근 교수 등 학계측 인사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의 김자혜 이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래 사무총장 등 관련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설승현 생활경제국장, 한국광고주협회 박효신 상무, (주)제일기획의 김규섭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이사 등 관련 업계 등의 관계자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중요정보공개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광고에 포함되어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며, 소비자가 상품·용역의 중대한 흠결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클 경우에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표시·광고시에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이다.

공정위는 다른 법령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¹⁾은 고시대상에서 제외한 후 중요정보공개 대상과 정보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방침으로 있다. 공정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중요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많고 사후구제가 곤란하거나 우려가 큰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을 중요정보공개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향후 예식장업이나 전문서비스업 등과 같이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중요정보의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보화사회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시장정보의 원활한 제공은 21세기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 실현의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중요정보공개제도는 소비자의 정보 부족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중요정보공개제와 함께 도입된 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를 통해 기업의 행태가 진정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공정한 광고질서를 정착시켜 관련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내상품 뿐만 아니라 외국상품과도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화된 시장경쟁

1) 현재 식품위생법 등 53개 법령에서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에서 관련업계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후견적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자기 책임하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중요정보공개제는 이러한 소비자중심적인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요정보공개제 고시대상업종 및 중요정보내용(안) ◆

고 시 대 상 업 종	중 요 정 보 내 용
<p>1. 개별법령에 표시의무화가 없어 소비자피해가 빈발한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현상·촬영업 ▷ 장난감 제조업 ▷ 회원제 할인카드업 ▷ 학습교재 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 사진원판의 인도가 가능한지 여부 · 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사용시 유의사항 및 사용가능한 연령 ·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 가맹점의 위치 및 가맹점의 상품별 할인율 · 구입 후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와 철회의 구체적인 방법 · 파손 등 피해 발생시 교환·환불 여부 및 그 기준
<p>2. 개별법령에 표시의무화가 있으나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운영업 ▷ 학원운영업 ▷ 화물운송업 ▷ 부동산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 샤워장·탈의실·개인사물보관함 등 편의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규모 및 적정 수용인원 · 수강료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수강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 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거래(매매, 임대차)에 따른 중개수수료 · 중개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p>3. 잘못된 광고 또는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직접적이고 크게 발생시킬 우려가 큰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투자업 (뮤추얼펀드·수익증권) ▷ 장의업(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상품이 있는 경우 종합주가지수 등락대비 실현수익율 ·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 성과수수료, 운용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 수의원단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제조 지역 · 수의원단의 생산방법 및 생산지역

'99년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8월 2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외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99년 7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0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25개사가 계열제외되어 '99년 8월 2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99년 4월 1일 686개사에서 645개사로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14개사가 순감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1개사가 순감하였다.

◆ '99년 7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99. 7. 1	편 입			제 외						증 감	'99. 8. 2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계	합병	청산	지분 매각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60	9	1	10	17	2	4	1	1	25	△15	645
1~5대	226	-	1	1	10	1	3	1	-	15	△14	202
6~30대	444	9	-	9	7	1	1	-	1	10	△ 1	443

◆ '99년 7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 편입 : 10개사(회사설립 9, 주식취득 1)
- ◎ 제외 : 25개사(합병 17, 지분매각 4, 청산종결 2, 친족분리 1, 기타 1)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현대반도체	반도체 제조	주식취득	현대산업개발(주)	종합건설업	현대자동차(주)에 합병	△4
				아시아자동차공업(주)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 제조	기아자동차에 합병	
				기아자동차판매(주)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기아자동차에 합병	
				아시아자동차판매(주)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기아자동차에 합병	
				기아대전판매(주)	자동차판매업	기아자동차에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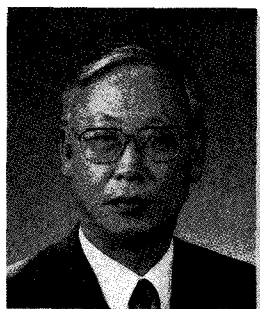
공정위 업무활동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대우	-	-	-	대우정밀공업(주)	자동차부품제조업	대우통신에 합병	△5
				코람프라스틱(주)	자동차부품제조업	대우통신에 합병	
				(주)경남금속	자동차부품제조업	대우통신에 합병	
				(주)대우제우스	운동경기업	대우자동차에 합병	
				(주)한국자동차연료시스템	자동차부품제조업	지분매각	
엘지	-	-	-	엘지반도체(주)	반도체제조업	지분매각	△1
에스케이	-	-	-	경진해운(주)	해상운송업	청산	△4
				(주)중원	건축 및 토목공사업	에스케이건설에 합병	
				(주)국일에너지	액화가스판매업	에스케이건설에 합병	
				한국골프채널	유선방송업	지분매각	
한진	인천항3부두 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	-	-	3
	부산3부두 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포항항7부두 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한화	한화종합화학(주)	석유화학제품 제조	회사설립	-	-	-	1
금호	-	-	-	한국씨이에스(주)	집단에너지사업	민관합동 법인으로 제외	△1
동아	대한통운터미널(주)	터미널관리운영	회사설립	-	-	-	3
	울산항만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마산항제4부두 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한솔	-	-	-	한솔무역	무역업	청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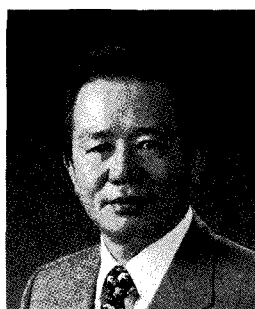
구분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증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증 명	사 유	
동부	부산항중앙 부두운영(주)	부두시설 관리업	회사설립	-	-	-	1
코오롱	-	-	-	코오롱메리크 섬유(주)	폴리프로필렌 단섬유제조 및 판매	코오롱글로벌에 합병	△2
				코오롱남바(주)	섬유류 염색 및 가공업	코오롱글로벌에 합병	
아남	-	-	-	피케이(주)	포토마스크제조업	지분매각	△1
강원 산 업	-	-	-	삼표강원중공업(주)	강관제조 및 판매	임원겸임해소	△4
				삼표상사(주)	철강주조업	강원산업(주)에 합병	
				동화상운(주)	도로화물운송업	삼표산업(주)에 합병	
				남양산림개발(주)	임업 및 벌목업	삼표산업(주)에 합병	
제 일 제 당	드림라인(주)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업	회사설립	-	-	-	1
계	10			25			△15

신규회원사소개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삼 호 개 발 (주)
대표 이 병 길
건설 제조업
강남구 역삼동 814-5



태 광 수 지 공 업 (주)
대표 신 진 문
제조업
강서구 등촌동 656-18